

의안번호	2200740
의 퇴 인	송옥주의원
회 답 일	2024.08.20.
추 계 번호	24D099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격지·오지 및 접경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숙소를 제공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2029년까지 4,226억 7,500만원 (연평균 1,056억 6,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관사 및 독신자 숙소 제공의 추가재정소요: 2026~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군 숙소지원	12,680	14,787	177,510	217,698	422,675	105,66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국가는 격지·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제2항 신설)	재량규정
2	안 제11조(보육 및 교육 지원)	국방부장관은 군인등(군무원 포함)의 근무형편상 군인등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군인등의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국내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취득하거나 인정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숙식시설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제3항)	의무규정
3	제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등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	-
2	안 제11조(보육 및 교육 지원)	-	국방부는 「국군복지단 군인 자녀 기숙사 관리 규정」에 따라 현재 군무원의 자녀도 입사가 가능하며, 기숙사 입사율은 91%(정원 2,338명 중 2,133명)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3	제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	국방부는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한 사례가 없고 개정안과 같이 군무원을 포함하여도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계에서 개정안에 따른 격차·오지 등 특수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른 특수지역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수지와 동일하다고 가정함
- 추계에서는 특수지역의 경우 민간주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거지원으로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함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1명 이상 있는 군인에게 관사를 지원하고, 미혼 또는 별거 군인에게 독신자숙소를 지원하고 있음
- 추계에서 주거지원을 위하여 제공되는 관사 및 독신자숙소의 건립비는 건축물 종류(관사, 독신자숙소)별 국방부의 면적당 기준단가(2024년 예산편성 기준)에 제로에너지할증을 적용하고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신축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심사기간, 관사·독신자 숙소 건립기간¹⁾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격지·오지 등 특수지역 근무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안 제9조제2항 신설)

□ 개정안에 따른 격지·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특수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특수지역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수지와 동일하다고 가정함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격오지 및 접경지역 및 취약지역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 격오지 및 접경지역 및 취약지역 현황

구분	격오지					접경지역 및 취약지역		
	갑 지역			을 지역	접적지역	도서	고지대	접경지역
기준	비무장 지대	울릉도 ·독도	서해 5도	해발 800미터 이상 고지대	군사 분계선에서 12km 이내	갑 지역 제외 도서지역	을 지역 제외 고지대	접적지역 제외 접경지역

자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7] 및 [별표 7의2]

□ 본 추계에서는 특수지역의 경우 민간주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로 한정하여 주거지원을 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은 격지·오지 등 특수지역 근무 군무원에게 군인의 주거지원²⁾ 방식과 동일하게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제공하도록 함
- 국방부에 따르면, 특수지역은 격지·오지 등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상 민간주택

1) 국방부에 따르면, 관사 및 독신자 숙소 건립기간은 일반적으로 4년이 소요됨

2)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군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1.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이하 이 조에서 “군 숙소”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 가.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부
 - 나.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 다. 월차임

② ~ ④ (생략)

이 부족하여 군무원의 민간주택임대자금 수요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사 및 독신자숙소를 건립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국방부에 따르면 특수지역 근무 군무원의 정원은 2023년 8월 기준 1,081명임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1명 이상 있는 군인에게 관사를 지원하고, 미혼 또는 별거 군인에게 독신자숙소를 지원하고 있음
- 국방부가 격지·오지 및 접경지역 군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른 혼인 및 동거 비율을 적용하여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 제공 대상인원을 추정하면, 관사 지원 대상 군무원의 비율은 33.4%이며, 독신자숙소 지원 대상 군무원의 비율은 66.6%임

[표 3] 격지·오지 및 접경지역 군무원 대상 혼인 및 동거 현황(2023.8월)

(단위: 명, %)

구 분	혼인		미혼	합 계
	동거	비동거		
인 원	602	139	1,060	1,801
비 율	33.4	7.7	58.9	100

자료: 국방부

□ 현재 국방부는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군 숙소의 장기공실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격오지 근무 시 군 숙소 여건이 가용한 경우에 군무원에게 주거시설을 지원하고 있음

[표 4] 격지·오지 및 접경지역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 현황(2023.8월)

(단위: 명, %)

구 분	계	관사	간부숙소
주거지원 현황	504	175	329
주거지원 비율	28.0	9.7	18.3

자료: 국방부

□ 개정안에 따라, 격지·오지 및 접경지역 군무원에게 숙소를 제공할 경우, 현재 정원에 따라 추가적으로 건설해야 할 숙소 수는 관사 470세

대, 독신자숙소 955세대임

[표 5] 격지·오지 및 접경지역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 수요 추정(2024)

(단위: 명)

합계	관사			독신자숙소		
	소계	제공	미제공	소계	제공	미제공
1,929	645	175	470	1,284	329	95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총 공사비) 건축물 종류(관사, 독신자숙소)별 국방부의 면적당 기준단가(2024년 예산편성 기준)에 제로에너지할증을 적용하고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을 고려하여 신축공사비 단가³⁾를 산정하고, 최근 5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증가율 6.8%를 적용하였음

[표 6] 국방부 소관 기준 군인 관사 및 독신자숙소 공사비(2026)

(단위: 백만원)

구 분	관 사	독신자숙소
건립비 단가	389.04	192.86
지원인원	470	955
합계	182,766	184,227

주: 각 건축물 형태별 국방부 기준단가에 부대공사비율, 제로에너지할증을 적용하고,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을 고려한 세대당 총공사비임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설계비) 총공사비에 국토교통부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건축설계 대가요율⁴⁾⁵⁾에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산

3) 2024년 기준 관사 신축단가는 3억 4,109만원, 독신자숙소 단가는 1억 6,909만원임

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4] 건축설계 대가요율에 따르면, 공사비 50억원, 100억원 및 200억원의 대가요율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제3종(복잡)			제2종(보통)			제1종(단순)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50억원	5.72	4.76	3.81	5.20	4.33	3.46	4.68	3.90	3.12
100억원	5.58	4.65	3.72	5.07	4.22	3.38	4.56	3.80	3.04
200억원	5.42	4.51	3.61	4.92	4.10	3.28	4.43	3.69	2.96

자료: 국토교통부

5) 종별 구분은 2종(보통), 설계도서량 구분은 중급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설계비 요율은 관사의 경우 4.266%, 독신자숙소의 경우 4.215%임

출한 건축설계 대가요율⁶⁾을 곱하여 산출

-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건축공사비에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전면책임감리비 요율⁷⁾ 및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

[표 7] 국방부 소관 기준 군인 관사 및 독신자숙소 설계비 등(2026)

(단위: %, 백만원)

구분	요율		비용	
	관사	독신자숙소	관사	독신자숙소
설계비	4.266	4.215	7,797	7,766
감리비	10.730	10.626	19,611	19,577
부대비	0.258	0.249	472	459
합계			27,880	27,801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른 군무원 관사 및 독신자숙소 건립비를 국방중기계획(2024~2028)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비율⁸⁾을 적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면 다음 표와 같이 추계됨

[표 8] 개정안에 따른 관사 및 독신자 숙소 제공의 추가재정소요: 2026~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관사	6,319	8,426	90,578	105,323	210,646	52,662
독신자 숙소	6,361	6,361	86,932	112,375	212,028	53,007
합계	12,680	14,787	177,510	217,698	422,675	105,66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요율 산정 시, 2024년 사업당 평균 총공사비(관사 79억원, 독신자숙소 104억원)으로 적용하여 직선보간법으로 요율을 산정하였음

7) 국방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현장사고 예방을 위해 감리회사가 공사현장의 감리·감독을 책임지는 전면 책임감리제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공사비 100억원 및 200억원의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은 다음과 같음

(단위: %)

	계산요율(%)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100억원	9.66	10.73	11.80
200억원	7.34	8.14	8.97

자료: 기획재정부

8) 국방중기계획(2024~2028)에 따른 관사 및 독신자 숙소 연차별 사업비 비율(반올림하여 산정)
 - (관사) 1년차(3%), 2년차(4%), 3년차(43%), 4년차(50%)
 - (독신자 숙소) 1년차(3%), 2년차(3%), 3년차(41%), 4년차(53%)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격지·오지 및 접경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숙소를 제공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2029년까지 4,226억 7,500만원 (연평균 1,056억 6,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표 9] 개정안에 따른 관사 및 독신자 숙소 제공의 추가재정소요: 2026~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군 숙소지원	12,680	14,787	177,510	217,698	422,675	105,66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2024년 기준 군무원의 관사 및 독신자숙소 수요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